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21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5. 3. 7.

다. 회 부 일 :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보건의료 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Ⅲ. 검토의견

1.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안 제2조)

현행	개정안
○ 정의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①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u>공공보건의료시설</u>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정의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①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u>공공보건의료시설</u>, <u>산후조리원</u>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산후조리원이란 출산 후 여성의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해 존재하는 요양 시설의 일종으로 「모자보건법」에서 관련 인력 및 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예방접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정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이하 생략)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일일이 법

를에 열거하지 않고 일부 예시를 활용하여 ①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②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¹⁾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요약)]

-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함
-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함
-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 ①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②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③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중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예시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1) 다만, 이러한 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외교·안보·국방시설 등은 제외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 있음.

「모자보건법」 제15조의2²⁾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³⁾ 수준이나, 기본 이용비용이 평균 286.5만원 수준⁴⁾으로 2021년(243.1만원) 대비 43.4만원, 2018년(220.7만원) 대비 65.8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보건복지부로의 <시·군·구별 산후조리원 미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 226곳 중 98곳(43.4%)은 해당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분만 후 6주(42일) 동안 지냈던 장소(중복응답) : 산후조리원(85.5%), 본인 집(84.2%), 분만 병원(74.5%), 친정(11.2%), 시가(1.0%), 기타(0.3%) 순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75.1%) → 2021년(81.2%) → 2024년(8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4) 추가서비스 포함 총 이용비용은 평균 387.5만원 수준임.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자체 현황]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1	서울	(해당사항 없음)	-
2	부산	중구 영도구 사상구	3개
3	대구	중구 남구 군위군	3개
4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4개
5	광주	동구	1개
6	대전	중구 대덕구	2개
7	울산	울주군	1개
8	세종	(해당사항 없음)	-
9	경기	과천시 광주시 동두천시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7개
10	강원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9개
11	충북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9개
12	충남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9개
13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11개
14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14개
15	경북	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14개
16	경남	사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개
17	제주	(해당사항 없음)	-
합 계			98개

자료: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산후조리원 미보유 현황 자료>('24.12월말 기준)

따라서, 민간산후조리원 대비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인구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은 지자체에도 설치가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낮추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 산모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의 예시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개소수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52개	21개	431개	177만원	356만원	8.7명	12.3명

자료: 보건복지부('24.6월 기준, 휴업한 산후조리원 제외)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민간투자법」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는데, 개정안과 같이 개별 사업유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기존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법률에 ‘열거주의’ 방식(개별법에 따른 53개 시설)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 경우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사회수요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법률에 열거된 사회기반시설과 목적 등이 유사한 시설임에도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3월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정 전 - 열거주의	개정 후(현행) - 포괄주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생략) ...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이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 시설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현행 「민간투자법」 상으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임.⁵⁾

따라서,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별 사업 유형을 법률에 추가하는 것은
포괄주의를 규정한 「민간투자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⁶⁾

5) 다만,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음.

6)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도 개별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포괄주의 체계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민간투자 대상 시설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추진 가능하므로 추가로 규정할 실익이 낮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u>공공보건의료시설</u>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나. ----- ----- <u>공공보건의료시설, 산후조리원</u> ----- -----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3

